

인천대학교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지침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총장후보자 및 총장예비후보자 홍보방법) ① 총장후보대상자 홍보는 총장후보대상자에 의한 홍보에 의한다.

② 총장예비후보자 홍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선정공보
2. 합동연설 및 정책토론회
3. 총장예비후보자에 의한 홍보

제3조(홍보기간) 총장후보대상자의 홍보기간은 총장후보대상자 확정공고일 부터 총장예비후보자 확정공고일 까지로 하고, 총장예비후보자의 홍보기간은 총장예비후보자 확정공고일 부터 정책평가단 평가 전일까지 실시하며 홍보기간 이외의 홍보는 금지된다.

제4조(선정공보) ① 총장예비후보자는 홍보를 위한 선정공보를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(선정공보 작성 요령)에 따라 USB메모리로 제작하여 출력물 1부와 함께 총장예비후보자 확정공고 후 1주일 이내에 총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선정공보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기호·총장예비후보자 사진·학력·경력·학술 활동(연구 활동·학회 활동)·봉사 활동(학내 봉사 활동·학외 봉사활동)·공약 사항 등이며, 인사말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.

③ 선정공보 작성요령은 A4규격 12쪽 이내로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 형식으로 작성한다.

④ 총장추천위원회 선정공보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선정공보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접수된 선정공보는 총장예비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라 1책으로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, 학내 구성원 및 총장추천위원에게 제공한다.

제5조(합동연설 및 정책토론회) ① 합동연설 및 정책토론회는 홍보기간 중 인천대학교 교원, 직원, 조교, 동문,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개최 5일 이전에 공지한다.

② 합동연설 및 토론회의 진행 내용은 종료 후에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③ 합동연설 및 토론회 진행방법과 진행자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④ 합동연설 및 토론회 진행자는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6조(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에 의한 홍보) ①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는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다.

1. 인천대학교 법인이사회 이사에게 하는 홍보
2.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하는 홍보
3. 벽보나 현수막의 부착
4.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인쇄물의 배부
5. 호별(교수연구실) 방문 및 후보자가 주최하는 집회 개최 <개정 2024.11.05.>

6.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
7. 홍보 목적의 매수행위
8. 선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
9. 방송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행위
10. 기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·제한되는 행위

제7조(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 ①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가 선정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장추천위원회는 경고, 시정명령, 자격박탈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학내구성원은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예비후보자의 선정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총장추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부 칙 (기준 제2호, 2016.3.11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준 제6호, 2020.3.5.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준 제15호, 2020.11.26.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준 제17호, 2020.12.16.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준 제17호, 2020.12.16.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준 제21호, 2024.11. 5.)

이 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